

#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



#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2. 12. 13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(이하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 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스포츠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(이하 “경기단체”라 한다)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장애인스포츠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
7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8.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  2. 부위원장 1인
- 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원 선임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은 경기단체에서 선출된 자로 장애인체육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

한다)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.

- 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기단체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, 위원으로 선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5.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

**제10조(회의소집)**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정기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2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3조(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** ① 장애인체육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장애인체육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선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

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사무국 설치)** ① 장애인선수 및 은퇴선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(2022. 12. 1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